

카네코 키요토시 동경의대 교수 초청 강연 및 한·일 공동토론회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 일시 : 2006년 6월 15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 3층 강당 (해화동)

■ 주최 : 식품 위생 및 광우병 안전 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한우협회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환경정의 환경운동
연합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자료집 목차

1. 토론회 일정 -----	3
2. 카네코 키요토시 교수 소개 -----	4
3. 한국정부의 미국 쇠고기 안전성 주장에 대한 비판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	5
4. 참고자료 1 프리온 -----	21
5. 참고자료 2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색을 위한 정밀 진단법 -----	21
6. 참고자료 3 용어(terminology) -----	23
7. 참고자료 4 사람과 동물의 프리온 질환 -----	24
8. 참고자료 5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일지 -----	25
9. 한미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 녹색연합 활동가) --	35
10. 국제연대 메시지 : 일본 소비자연맹 결의문 -----	44
11.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결의문 -----	45

토론회 일정표

■좌장 :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1부 카네코 키요토시(金子清俊) 동경의대 교수 강연회 (순차통역)

■2부 토론 : 각 10분

- ① 한국정부의 미국 쇠고기 안전성 주장에 대한 비판 : 박상표(국건수)
- ② 한미FTA와 식품위생검역협정의 문제점 : 이유진(녹색연합)
- ③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 : 장기선(전국한우협회 부장)
- ④ 광우병과 정부의 예방정책에 대한 문제점 : 김정범(인의협)

■3부 종합 토론 및 강연자 정리 발언

■ 실무 연락 : 변 혜 진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Director of Planning Board

Korean Federation of Medical Groups for Health Right(KFHR)

unoccupy@kornet.net 010-7179-2917

phone + 82-2-3675-1987 FAX + 82-2-766-6025

home page : www.kfhr.org

제1부 카네코 키요토시 동경의대 교수초청 강연회

■ 카네코 키요토시 교수 소개

Kaneko Kiyotoshi(金子清俊)

니이가타 대학 의학부 졸업

캘리포니아 대학 조교수

국립정신신경센터 신경연구소 질병연구제7부장

현, 도쿄의과대학 의학부 신경생리학강좌 주임교수

전, 식품안전위원회 Prion 전문조사회 의장 대리

한국정부의 미국 쇠고기 안전성 주장에 대한 비판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vetnews@vetnews.or.kr

머리말

한국정부는 지난 6월 7일로 예정되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다음 달로 연기했다. 미국 현지 도축장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 미국 산 쇠고기와 다른 나라의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거나 30개월 이상과 이하의 소를 처리하는데 있어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와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 한국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위생 기준의 문제 등 본질적인 게 아닌 주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 내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지난 6월 8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미국 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결과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현지 조사) 내용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한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개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양측이 상의를 해야한다”며 조사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6월 12일자 《출산신문》은 “37개 수출작업장 중 7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문제의 7개 작업장 소유회사는 타이슨푸드(3개), 카길(2개), 스위프트(1개), 워싱턴비프(1개)”라고 보도했다. 타이슨푸드, 카길, 스위프트는 미국 육류 가공의 상위 3대 기업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육가공 산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상과정에 대한 정부의 ‘비밀주의’ 이면에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의 허술한 광우병(BSE) 검역·예방체계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예방적 금지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의해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방침을 반드시 철회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

1. 치아조사만으로 광우병 감염 소 나이를 판정한 것은 비과학적이다

지난 3월 13일 미국 농무부(USDA)는 앨라배마 주에서 미국 내 3번째 광우병(BSE) 양성 소가 확인되었고 발표하면서, 역학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과학적·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해당 소가 10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소가 1997년 사료 금지법 이전에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한국 농림부도 미국의 비과학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난 4월 26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BSE) 감염 소의 나이를 치아조사(dental examination)만으로 8살 이상이라고 판정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농림부가 이러한 결정을 발표한 것은 한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통해 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과학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입증해야 할 책임까지 떠맡아 미국의 최종역학보고서¹⁾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 (그림 1) 미국 농무부(USDA)는 지난 3월 17일, 광우병 감염 소가 10살이 넘는 증거라며 달랑 치아사진 1장만을 우리 농림부에 보냈다.

일반적으로 소의 치아(dentition)는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적 특성, 먹이, 질병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상대적 나이를 추정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documentation)가 없을 경우 절대적 나이를 판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없다²⁾는 것이 과학적 입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광우병 소 나이

1) 《Alabama BSE Investigation Final Epidemiology Report May 2, 2006》

http://www.aphis.usda.gov/newsroom/hot_issues/bse/content/printable_version/EPLFinal.pdf

2) 《National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Surveillance Programs : Terms and Conditions》,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2005.4.28

판정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들을 비교 검토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미국정부는 3월 17일, 광우병 감염 소의 치아사진 1장(그림 1)만을 달랑 우리 농림부로 보내며, 해당 소가 10살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으로 미국정부가 한국정부를 얼마나 철저하게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지 확인되었다. 미국정부는 광우병 감염 소가 개체별 인식을 위해 귀에 붙이는 인식표(이표)·피부 문신·스프레이 표시 등 개체별 인식표조차도 없었으며,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도 없어 객관적 나이 증명이 힘들어지자 우격다짐으로 “무조건 10살이 넘었으니 우리를 믿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도 MBC TV와 인터뷰에서 “텐티션(치아감별법) 갖고는 안 되죠. 텐티션은 30개월인지, 5살인지, 4살인지 다 똑같은니까, 이 한두 개는 빠졌겠죠.”라고 밝히기도 했다.



▲ (그림 2) 미국에서 3월 30일 보내온 2004년 8월판 《Procedure Manual for BSE Surveillance》 부록으로 실린 “Uniform Aging for BSE Sampled Animals”. 사진에서 8살 이상의 소의 치아는 절치사이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치근도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자 미국은 3월 30일, 3개의 자료를 우리 농림부에 팩스로 보냈다. 팩스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서 4월 초에 현지조사팀을 보낼 것을 종용하면서 FTA 협정을 위한 협력적인 환경조성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⁹⁾

당시 팩스 자료에는 ▲해당 소를 안락사시킨 수의사 Darrel Gray의 소견서와 ▲미 농무부 동식물검사소의 엘라배마 지역담당 수의사 Kenneth L. Angel의 소견서가 있다. 이들은 소견서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설명’ 없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 소의 치아를 볼 때 10살 이상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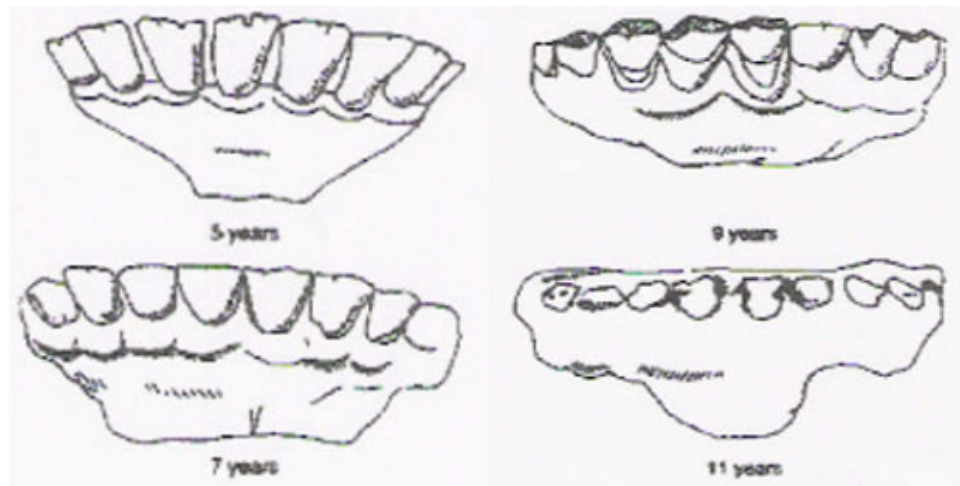
또한 미국 측은 ▲2004년 8월판 《광우병 감시를 위한 실무 지침서(Procedure Manual for BSE Surveillance)》 부록으로 실린 “광우병 감염 소의 치아 나이 감별법(Uniform Aging for BSE Sampled Animals)” (그림 2)과 “그림으로 보는 광우병 소의 치아 나이 감별법(Sketches of Uniform Aging for BSE Sampled Animals)” (그림 3)을 팩스로 보냈다.

(그림 2)에서 8살 이상의 소의 치아는 절치사이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치근도 심하

[http://www1.agric.gov.ab.ca/general/progserv.nsf/all/pgmsrv187/\\$FILE/federal-version.pdf](http://www1.agric.gov.ab.ca/general/progserv.nsf/all/pgmsrv187/$FILE/federal-version.pdf)

9) "We encourage Korea to send its audit team to the United States early next month. It is important that we proceed on this to encourage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 that will began shortly". Letter From J.B.Penn (Under Secretary 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to Lee Tae-sik(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March 29 2006.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림부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

게 노출되어 있다. (그림 3)에서 11세의 소는 잇몸과 같은 높이에 이르러 이가 빠지기 직전까지 치아가 마모되었다.



▲ (그림 3) 미국에서 3월 30일 보내온 2004년 8월판 《Procedure Manual for BSE Surveillance》 부록으로 실린 "Sketches of Uniform Aging for BSE Sampled Animals". 그림에서 11세의 이가 빠지기 직전까지 치아가 마모되어 잇몸과 거의 같은 높이에 이르렀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치아조사가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과학적인 근거라며 텍사스 교정국이 관리하는 헤어포드, 브라만 및 두 품종의 1대 잡종으로 구성된 10개 군집 약 7천마리의 육우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Roy B. England의 《치아 돌출, 발달과 마모에 대한 연구》(그림 4)를 한국정부에 보냈다.



▲ (그림 4) Roy B. England의 《치아 돌출, 발달과 마모에 대한 연구》. 11세 소의 치아 사진을 보면, 씹을 수 있는 절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풀을 먹기 위하여 잇몸판을 이용해야 할 정도다.

(그림 4)를 보면 10세 소의 치아는 마모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어 잇몸 후퇴가 네 쌍의 치아 모두에서 보인다. 그리고 11세 소의 치아는 씹을 수 있는 절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풀을 먹기 위하여 잇몸판을 이용해야 할 정도다.



▲ (그림 5) 미국 정부가 4월 11일, 앨라배마 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11세 암소'의 치아 사진이라며 우리 농림부에 보낸 사진. 이 사진은 그동안 미국정부가 보내온 다른 자료들과 정면으로 모순되며, 치아조사의 비과학성을 증명한다.

그런데 미국은 (그림 2)~(그림 4)의 자료만으로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소의 치아상태가 10살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측하다고 느꼈는지 (그림 5)를 보내왔다.

(그림 5)를 보면, 11살 먹은 암소의 치아는 마모가 그리 심하지 않다. 만일 출생기록이 담긴 문서가 없을 경우, 어떤 수의사도 (그림 5)만으로 이 소의 절대 나이가 11살이라고 판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번에는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가 11살 먹은 암소보다 치아가 더 마모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10살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그림 2)~(그림 4)를 보여주며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가 10살 이상이라는 근거라며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 5)를 근거로 광우병 감염 소가 11살짜리 소보다 더 치아가 마모되었으므로 10살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의 이러한 주장은 창과 방패의 고사⁴⁾처럼 명백하게 서로 모순(矛盾)된다.

현재 미국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는 모두 9500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소의 절대 연령을 단순히 치아검사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은 통계학적으로도 올바른 과학적 방법이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9500만 마리 소 중에서 겨우 7000마리의 소를 조사한 Roy B. England의 《치아 돌출, 발달과 마모에 대한 연구》는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판정에 적용할 수 없다. 특히 '건강하고 전형적인' 치아사진 몇 장을 골라서 광우병에 감염된 지극히 '비정상적인 병든' 소의 나이를 판정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 측에서 보내온 치아사진 자료들 사이에도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농림부는 지난 4월 13일,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건국대 장병준 교수, 종축개량협회 이종현·문효식 등 4명을 제주도로 출장을 보내 과학적인(?) '치아조사'를 실시했다. 농림부의 과학적(?) 조사의 내용은 제주도에서 8~13세 샤로레, 앵거스 암수 7두의 치아를 촬영한 사진 7장을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와 비교하여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 판정을 한 것이 전부다.

4) 《한비자(韓非子) 제36 난일(難一)전》, “초(楚)나라에 방패와 칼을 파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방패를 자랑하며, '이 방패는 굳고 단단해서 뚫을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자기의 칼을 자랑하면서 '이 칼은 어찌나 날카로운지 뚫지 못하는 물건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른다면 어찌 되겠소(以子之矛, 攻子之盾, 何如)?" 창과 방패를 자랑하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농림부는 4월 19일~23일, 미국 BSE 감염 소 나이 확인을 위해 3명(건국대 장병준 학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종현 사무국장, 농림부 가축방역과 장기윤 사무관)을 미국 현지로 파견했다. 지난 3월 30일 미국이 팩스를 통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내용대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미국 현지 출장을 실시한 것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이러한 눈물겨운 과학적(?) 조사는 통계학적으로 전혀 유의미성이 없는 넌센스에 불과하다. 결국 치아조사에 의한 나이 판정은 ‘고무줄’과 같아서 미국 정부는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가 10살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 정부는 8살 이상이라고 판정하였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미국은 1997년 반추류에 동물성 사료 투여를 금지하는 법을 기준으로 고무줄을 늘려 10살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반면,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안(농림부고시 제2006-16호)》 제 21조 단서조항에 사료규제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기준으로 8살 이상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므로 비과학적인 치아조사에 의한 광우병 소 나이 판정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2.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라도 안전하지 않다

농림부고시 제2006-1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6년 3월 6일

농 립 부 장 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1. 도축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농림부고시 제2006-15호). “도축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 는 문제의 조항이 들어 있다. (출처 : 농림부)

한미 양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⁵⁾을 근거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30개월 미만의 광우병(BSE) 소가 확인되었다.

영국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최소한 19건의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일본에서

5) OIE Chapter 2,3,13,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도 30개월령 미만에서 2건의 광우병 사례 발생했다.⁶⁾ 2003년 10월 후쿠시마현(福島縣)에서 23개월령 홀스타인 거세우에서 광우병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히로시마현(廣島縣)에서 21개월령 홀스타인종 거세우에서 광우병(BSE) 양성판정이 나오는 등 2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와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2건의 광우병은 일본에서 동물성 사료(MBM) 투여금지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및 소각 의무화 초치가 취해진 2001년 10월 이후에 태어난 소들에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30개월령 이하의 어린 소를 증명할 과학적 방법을 마련하지 못해, 대부분(80% 이상) 비과학적인 치아검사(dental examination)만으로 소의 나이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축방역협의회
회의자료

BSE관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2005. 11. 29.

농 립 부
축 산 국

- 미국내 전체 사육두수중 월령감별이 가능한 것은 15~ 20%

※ 미국내 도축연령은 전체의 80~85%가 15~20개월령이 차지하지만
일본과 합의한 A40등급(17개월령 이하)은 쇠고기 생산량의 8% 이하

○ BSE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소의 개체식별 시스템의 조기구축이 필요

▲ 2005년 11월 19일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회의 자료. “미국 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 라고 기록하고 있다. (출처 : 농림부 축산국)

농림부가 2006년 3월 6일 제정하여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농림부고시 제2006-15호)의 11번 항목에는 “도축소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dentition)에 의하여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캐나다와 일본 등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치아검사’만으로는 결코 절대연령을 확정지을 수 없으며, 30개월 미만임을 판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감별법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하겠다는 것은 안전성을 포기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엘라배마 광우병(BSE) 감염 소에 대한 최종 역학조사 결과(Final

6) ①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②Yamakawa Y et al, for the Expert Committee for BSE Diagnosi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 2003, Atypical proteinase K-resistant prion protein(PrPres) observed in an apparently healthy 23-month old Holstein steer, Japan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56:221-222

③<http://www.defra.gov.uk/aniamlh/bse/statistics/bse/young-old.html>

Epidemiology Report)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미국 농무부는 앨라배마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는지 알 수가 없면서도 치아조사만으로 해당 소의 나이가 10살 이상일 것이라는 비과학적인 결론을 내놓았다.

이러한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5월 3일자 《캐나다안비즈니스(canadianbusiness)》는 “미국 정부당국은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를 확인시켜줄 기록을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소의 치아검사를 통해 나이가 10살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치아검사는 소의 나이가 5살이나 6살이 넘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근사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2006년 1월 기준으로 모두 9710만 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⁷⁾ 이들 소의 치아는 각각 품종, 지역적 위치, 유전적 특성, 먹이, 건강상태, 질병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한 개체 차이가 심해서 결코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치아를 기준으로 절대적인 나이를 측정할 수 없다. 현재 농림부가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80% 이상에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농림부가 스스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포기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말 한미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을 할 당시 농림부는 미국 소의 80% 이상에서 나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으며,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BSE)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철저하고 깐깐하게 국민건강을 지켜나가겠다”는 농림부는 광우병 감염 소에 대한 충실한 과학적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3. 미국의 광우병 검역체계를 결코 신뢰할 수 없다 .



▲ 지난 1월 21일, 일본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미국산 수입 쇠고기 사진

주는 사건이다.

사실 미국의 도축·포장과정에는 살코기와 내장 등이 섞일 수밖에 없는 자동기계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이나 홍콩에서 발각되었던 수입위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재현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홍콩에서도 수입조건이었던 뼈 없는 쇠고기가 아니라 뼈가 붙은 쇠고기가 3번이나 발견된 바 있어 해당 수출작업장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뉴욕과 콜로라도의 수출가공 업체에는 미국 정부의 검역관들이 상주해 있었고 문제의 소고기에는 안전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었다. 결국 이 사건들은 수출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점을 말해

7)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NASS) Report : Cattle》, 2006.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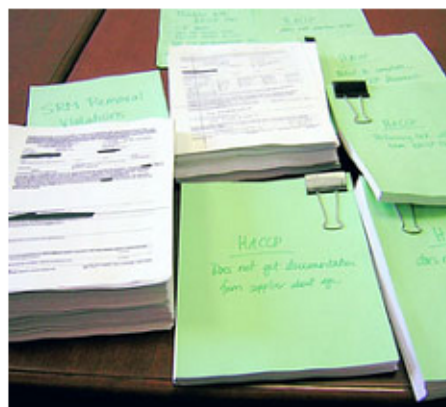
심지어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조차도 지난 5월 4일 농업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에선 뼈와 살코기의 분리작업 시 전기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살코기에 핏조각이나 가루가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특히 국내 육가공공장 등은 과거 중국산 1회용 주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고성능의 이물질 탐색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쇠고기에서 핏조각이 발견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은 2003년에 도축한 3549만 5천두의 소들 중에서 겨우 0.6%인 20,543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1% 정도를 검사하고 있다.⁸⁾ 반면 일본은 20개월령 이상의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유럽은 30개월령 이상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소를 검사하고 있다.

년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4
총두수	412	495	465	584	855	731	988	2,309	4,870	19,777	20,543	15,513
기업불능우	-	199	223	266	219	344	651	1,895	4,464	14,951	16,560	8,902
폐사우	-	-	-	-	-	-	-	-	-	2,759	3,090	5,253

▲ 미국수의연구소(NVSL)의 BSE 검사 수행 실적

실제로 미국의 BSE 검사 체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광우병 의심 소를 은폐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 7월 휴스턴의 지역신문인 《휴스턴크로니클》은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는 대신 그냥 도살 후 물어버린다”고 지적했다.



▲ 미국 농무부의 BSE 위반 기록 자료

일본의 《이와테(岩手)일보》도 지난 4월 3일자 논설을 통하여 “일본 수출을 인정받은 미국 육식시설 37곳 중에서 과거에 위험부위제거의 순서에 위반이 없는 곳은 고작 2군데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현재 안전관리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 시민단체인 Public Citizen(소비자단체인 Food & Water Watch 등의 NGO)이 2004년 12월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2005년 8월 15일 미국 농무부가 공개한 《광우병 관련 위반사례》를 통해서도 미국 기업들이 BSE 특정위험물질(SRM)제거나 월령 확인 등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미국 농업부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이라고 밝혔으며,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위반사례가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총 829건 가운데 460

8) ①미국수의연구소 <http://www.aphis.usda.gov/vs/nvsl/>

②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미국 BSE 발생관련 조사 보고서》(조사기간 2004.5.16~5.29)

9) Public Citizen, 《ESE Noncompliance Record Analysis》

<http://www.citizen.org/cmep/foodsafety/madcow/articles.cfm?ID=13903>

건은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류 검역 프로그램인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위반이었다. 460건의 위반 사례 중 275건은 검역 프로그램에서 광우병의 위험성과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에 관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표 1) 특정위험물질(SRM)의 정의 및 제거방법¹⁰⁾

구 분		OIE	미국	EU	일본
SRM	정의	-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BSE 위험관리국>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척추, 배근신경절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삼차 신경절, 척추,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소장 및 편도	- 12개월령 이상 소 : 두개(하악제외, 뇌, 안구포함), 척추,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전제, 편도 및 장간막	-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제외), 척추, 척추, 회장원위부, 배근신경절
	제거 방법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금지	상기 부위를 식품에서만 배제	상기 전 부위를 제거·폐기	상기 전 부위를 제거·소각

최근 혈액을 통한 인간 대 인간 감염이 확인되고, 골수나 말초신경에서도 변형프리온이 발견되었다. 또한 근육이나 다른 장기를 통한 광우병 감염이 쥐 실험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정의 및 제거방법은 EU나 일본에 비해 범위가 훨씬 좁다. 특히 미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식품에서만 배제하는 미약한 제거방법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의 나이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위반사례가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소 나이를 엉터리로 판정한 사례가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86건이나 되었으며,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되었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0건이나 적발됐다. 소의 나이가 30개월 이하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특정위험물질 제거와 수출용 쇠고기 선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2월 1일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에 의하면 소 도축장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육안 검사도 5-10%만 이루어졌으며, 또한 감사대상 도축장 1/6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식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 소비자연맹은 보고서¹¹⁾를 통해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밝힌바

10) 우석균,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2006. 4. 28 국회공청회 자료집 p12

11) Michael Hansen, Ph.D, 《Statement of Consumers Union on USDA OIG Audit Repor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Surveillance Program》, 2006.2.2.
(http://www.consumersunion.org/pub/core_food_safety/009118.html)

있다. 보고서는 미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의 검열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우며,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서 별도의 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 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 검사의 의미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 미국의 사료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다.

▼(표 2)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¹²⁾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2004년 입법예고, 축산업계반발로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5년 입법예고	영국에서 시행후 16,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미국은 동물성 사료(MBM) 정책에 있어서도 영국에서 이미 1988~1990년 사이에 실시했다가 무려 2만7천마리가 광우병(BSE)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패한 ‘되새김(반추) 동물에게만 동물성사료(MBM) 금지(Ruminant Feed Ban)’ 정책을 1997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하자 국제전문가위원회는 미국 농무부장관에게 모든 소의 전체 소장(intestine)뿐 아니라, 생후 12개월 이상된 소의 모든 특정위험물질(SRM)까지도 유통 금지시킬 것을 강력하게 권고¹³⁾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그리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공동으로 “만약 어떤 국가에서 광우병이 확인되었다면…비반추동물(non-ruminant)용 사료(MBM)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것으로 준비되어야 한다(즉,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모든 동물사료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을 금지시켜야한다.)” 라고 권고¹⁴⁾하기도 했다.

12) 우석균,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2006. 4. 28 국회공청회 자료집 p6

13) Report of the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Foreign Animal and Poultry Disease, Measures Relating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the United States, February 13, 2004 (http://www.aphis.usda.gov/tpa/issues/bse/bse_sec_adv_comm.pdf)

14) Joint WHO/FAO/OIE Technical Consultation on BSE: public health, animal health and trade, OIE Headquarters, Paris, 11-14 June 2001, Conclusions and key recommendations

그러나 미국은 국제전문가위원회와 WHO-FAO/OIE의 권고를 받아들이지도 않았으며, 미국 내의 모든 농장이 1997년 8월부터 즉각적으로 '제한적 동물사료 금지정책'을 100% 준수했다는 증거도 없다. 게다가 미국과 함께 1997년 이후 '되새김(반추) 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MBM) 금지' 하는 법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이 법 실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양성률이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미국의 동물성 사료(MBM) 정책은 교차오염과 이월효과로 인하여 BSE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미국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교차오염(cross-over)은 동물성사료(MBM)가 들어간 닭이나 돼지의 사료가 소에게 투여되어 광우병(BSE)을 유발하는 것을 말하고, 이월효과(carry-out)란 농장에 쌓여 있거나 저장소로부터 배포된 육골분 사료(MBM)를 소가 섭취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하여 미국 식약청(FDA)은 돼지나 가금류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동물성 사료 정책을 2004년 7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미국축산기업의 반발로 이 입법 조치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년 10월 다시 입법예고를 한 법안은 BSE를 예방하기에는 불충분한 정책이다. 이 법안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을 돼지나 가금류에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료규제 정책은 필연적으로 광우병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5. 국내 유통단계의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 (표3) 한국과 일본의 광우병 대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비교

	한국	일본
BSE 발생 유무	미발생국(0)	발생국(26)
수입조건	30개월 이하	20개월 이하
수입중단	위반 작업장만	전면중단
검사건수	BSE 의심소 및 위험군 검사 부족	21개월 이상 전수검사 (2005.8~)
SRM 제거	시행하지 않음	전량 제거 및 소각
사료금지 정책	반추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 금지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현재 국내에서는 1~5% 미만의 한우에서만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산을 선택할 권리가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농림부는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고, 2007년부터는 연면적 300㎡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쇠고기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시범 실시할 예정이라고

http://www.oie.int/esp/publicat/rapports/en_bse%20who-fao-oie.htm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출생 연월일, 품종, 암수 및 거세여부, 어미소·아버지소 정보, 사료정보(조사료 또는 농후사료, 자가생산 또는 구입, 자가배합 여부, 골분 또는 성장호르몬 등의 혼입여부 등), 병력 및 접종내역(백신의 종류 등), 사육방법(방목 또는 축사 사육), 축사정보(면적 또는 형태 등), 생산자정보(농산물과 동일), 도축장까지의 출하방법, 분뇨처리방법 등을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바코드 또는 IC칩 등을 이용한 이표(耳標)를 통하여 사육에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정보화해야 한다.

국내 항생제의 단 6%만 수의사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등 수의사 처방제 조차도 실시되지 않은 현실¹⁵⁾ 속에서 제대로 된 이력추적제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이력추적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소의 출생 연월일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질병에 걸려 무슨 약을 투여받았는지에 대한 수의사의 처방 기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이력추적제를 전격적으로 도입한 이유가 단순히 생산과 유통에서 효율성을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는 점¹⁶⁾을 잊지 말아야 한다.

쇠고기에 대한 국내 안전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었을 때, 소비자들은 광우병 공포로부터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6. 외국 전문가들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정부기구인 《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전문조사회》전문조사위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이 사임해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사임한 위원들이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대한 정부 주도의 결론에 반대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어용화’에 반대한 의원들이 교체됐다고 보도했다.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사임한 한 위원은 “(정부의 결론은) 과학적 평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로 사임한 전문조사위원 6명중에서 아마우치 카즈야(山内一也) 동경대학 명예교수와 카네코 키요토시(金子清俊) 동경의대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평가에 대해서 최후까지 신중한 의견을 진술했으며, 동물위생연구소 프리온병연구센터의 시나가와 신이치(品川森一) 전(前)센터장은 “전두(全頭)검사 완화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심의에 의문을 느낀다”며 회의에 계속 불참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 발간된 2005년 12월 20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연맹의 보고서¹⁷⁾와 2006년 2월 1일에 발표된 미국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2006년 2월 25일에 발표된 미국 의회 회계감시원(GAO)의 보고서 등에서도 다음과 같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15) 참여연대, 《축수산 동물약품(항생제) 오·남용 실태보고서》, 2005.10.4. pp7~8

16) ①라울 그린, <유럽의 농산물 생산이력제 운영체계>, 『Horticultural Technology』, 2005. 8

②배민식, 《일본의 쇠고기생산유동이력추적제》, 『입법정보』 (제145호), 2004.11.22

17) Consumers Union's comment on FDA Docket No. 2002N-0273: Substance prohibition from use in animal food and feed

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20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이 없음

(2) 2005.8.12 미 식품안전청

-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3)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4)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의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했으며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약소국을 대상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을 무시한 뼈 있는 쇠고기와 부산물 수입까지 강요하고 있다. 페루정부는 2006년 5월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와 냉장 및 냉동 위(Stomachs), 신장(Kidneys)와 간(Livers)의 수입을 허용하였으며, 베트남정부도 30개월령 이하의 뼈 있는 쇠고기 및 부산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부위를 확대하였다.

이렇게 몇몇 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미국정부는 광우병 비발생국가인 한국에까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의 거대 축산자본의 로비를 받은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민주당 소속의 미국 상원의원 30여명은 이태식 주미대사에게 “만약 한국이 뼈 있는 쇠고기와 찌꺼기 고기를 포함,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제품 전부에 대한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필요한 의회의 지지를 얻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는 서한을 보냈다.

이것은 광우병 오염국인 EU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있고, 또한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의 수입조건이 2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쇠고기(갈비 포함)임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미국의 강압이라고 볼 수 있다.

맺음말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말 영국에서 광우병이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을 때, 한국은 광우병이 없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안전한 국가가 아니며, 미국 내의 양·엘크야생 사슴에서 TSE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광우병 발생은 시간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2003년 말 미국에서 첫 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현재(2006.5)까지 모두 3건의 광우병 양성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거대 축산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료들의 행태는 1980~90년대 영국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1989년 10월, 35세가 넘는 여성이 인간광우병(vCJD)에 걸렸으며, 이 여성은 광우병(BSE)이 발생한 농장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정부과학위원회는 “인간이 광우병(BSE)에 걸릴 위험은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1993년 영국의 의학전문지 『랜싯(Lancet)』 341호에 낙농업자 피터 워허스트(61세)가 “직업상 BSE에 걸린 가축과 직접 접촉한 사람이 CJD에 걸린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하자, 영국 정부의 수의학 담당 부국장 케빈 테일러는 광우병(BSE)과 인간광우병(vCJD)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국 농업장관 존 굼머도 1990년 5월 BBC TV에 출연하여 “BSE가 동물에게서 인간에게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참조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공언하였다. 심지어 쇠고기 버거를 즐겨먹던 15세의 건강한 소녀 빅토리아 림머가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때도 영국 보건부 의료국장 케네스 칼먼은 “그녀가 어디서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아무도 모르며, BSE가 CJD를 일으킨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¹⁸⁾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만성소모성 질병(CWD)에 감염된 사슴(96년 수입, 2001년 감염 확인)이 캐나다에서 수입되어 전국 차원의 캐나다산 수입사슴 추적조사 및 살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인간광우병(vCJD)으로 의심되는 20~30대의 사망자가 여러 건 발생했으나,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이다. 광우병 미발생국이 발생국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 발생건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프리온병에 대한 유럽과학운영위원회(ESC)의 보고(2001.11.29~30)에 의하면 병원성 프리온을 땅 속에 3년 동안 매몰하였을 경우 감염력이 감소되기는 하나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0.001g의 BSE 오염물질만으로도 BSE 감염이 가능하다는 실험실 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광우병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의 관료들은 1980~90년대 거대 축산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여 올바른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영국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영국정부 관료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다.

18) 마크 제롬 윌터스, 『에코데믹(Ecodemic), 새로운 전염병이 몰려온다』, 북폴럼, 2004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 과정은 한미FTA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한국정부는 한미FTA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수입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미국 환경보호국(EPA)과 한국 환경부가 공동으로 조사한 '제3차 통합환경 전략' 1차년도 연구결과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된 원인이 되는 배기가스가 지금보다 50% 가량 줄어든다면 최소 4368명~최대 1만310명(평균 7400명)의 사망자수가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미 FTA협상의 선결조건으로 한국정부에게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시키라는 무역압력을 행사했다.

미국의 부당한 무역압력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운명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쇠고기를 먹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들며 마시는 실험용 생쥐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식품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국익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정부가 '예방적 금지(precautionary principle)'의 원칙에 의해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반드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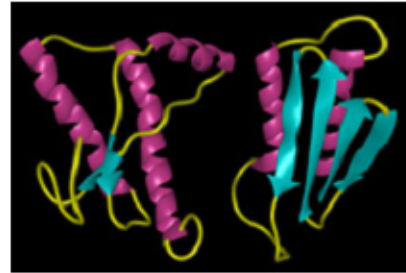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http://www.vetnews.or.kr>)

TEL : 02-6267-7582 / 011-336-8560

[참고자료 1] 프리온(Prion)

프리온은 핵산을 포함하지 않는 단백질로 정상적인 동물이나 사람의 뇌에 존재하는데 PrP라한다. 스크래피에 걸린 양, 광우병에 걸린 소, CJD환자의 뇌에서 PrP가 변질된 형태로 발견되는데 이를 PrP-sc라 부른다.

신경세포에는 프리온이란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되면 해로운 단백질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 프리온은 정상 프리온을 자기와 비슷한 병변 단백질로 만들기 때문에 결국 뇌 신경세포를 파괴하게 되므로 스폰지 모양의 병변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프리온의 구조

이런 병변을 나타내는 프리온은 분자생물학적으로 정상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당단백질로서 정상프리온단백질(PrPc)은 α-helix 구조가 많고 β-sheet 구조가 적으나 변형 프리온(PrPsc)은 α-helix 구조가 β-sheet 구조로 변형된 것이 특징이다. 변형 프리온은 단백분해 효소(proteinase)에 분해되지 않고 열, 자외선, 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다.

[참고자료 2]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색을 위한 정밀 진단법

검사방법	시료	진단요령
병리조직검사법	포르말린 고정 뇌조직	뇌조직의 특징적인 공포변성 확인
면역조직화학염색법	포르말린 고정 뇌조직	변형 프리온(PrPSC) 항원검색
면역블로팅검색법	신선 뇌조직	변형 프리온(PrPSC) 항원검색
전자현미경 검사법	신선 뇌조직	Scrapie Associated Fibril(SAF) 확인



▲ BSE 검사를 위한 두부(頭部) 절단

소해면상뇌증의 정밀진단은 다른 미생물에 의한 전염성 질병과는 달리 원인체가 쉽게 분리되지 않으며, 현재까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진단할 수 있는 혈청학적 진단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가축의 뇌 및 척수 신경조직의 정밀검사에 의해서만 진단이 가능하다.

BSE 확진은 도축 후 뇌의 해면형태(공포)를 검출하는 조직병리학적 검사이다. 일반적으로 BSE 공포는 뇌간의 가장 뒷부분인 연수의 obex 부위에서 좌우 대칭 형태로 분포되어 검사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자세한 BSE 검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 해면상뇌증 (BSE) 검사 과정

임상 검사

보행 이상

과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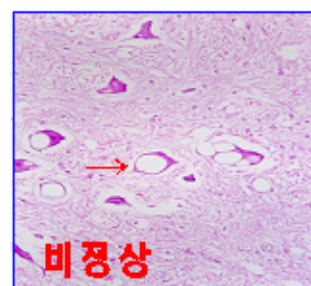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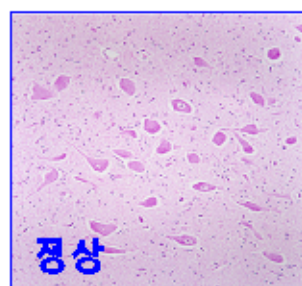
이상 행동



실험실 검사

병리조직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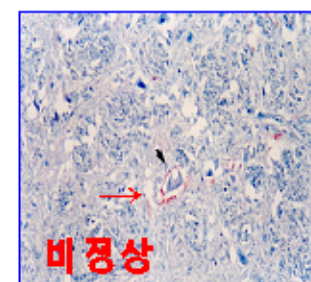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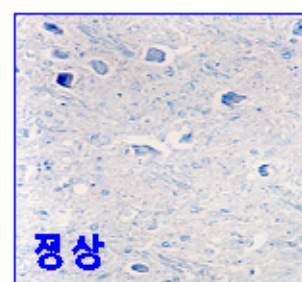
- ① 뇌조직 포르말린 고정
- ② 파라핀 포매
- ③ 조직 절편 제작 및 염색



※ 양성반응 : 신경세포 내 공포 형성

면역조직화학 염색

- ① 조직 절편 제작
- ② 항체반응 및 발색
- ③ 대조 염색



※ 양성반응 : 붉은 변형 프리온(PrP) 검출

전자현미경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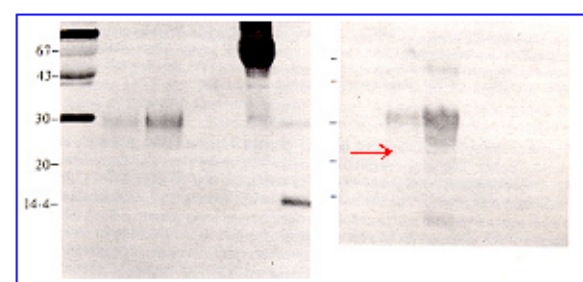
- ① 뇌조직 균질화
- ② 효소 처리 및 프리온 추출
- ③ 염색 및 검경



※ 양성반응 : 스크래피 관련 원섬유(SAF) 검출

면역 브롯팅 검사

- ① 뇌조직 균질화
- ② 변형 프리온(PrP) 추출
- ③ 전기영동 후 발색



※ 양성반응 : BSE 특이밴드 확인

[참고자료 3] 용어(terminology)

- BSE :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牛海綿狀腦症, 우해면상뇌증), 광우병의 공식 명칭으로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증상을 표현했다.
-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축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해요인을 단계별로 찾아내 제거해 나가는 종합관리체계를 말한다.
- mad cow disease(狂牛病, 광우병),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미친 듯이 난폭해지기 때문에 광우병이라고 한다. 이 병에 걸린 소는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는 등 증상을 보이다가 뇌에 스폰지처럼 작은 구멍이 생겨 이내 죽는다.
- MBM : Meat and Bone Meal(肉骨粉 飼料, 육골분 사료), 뼈와 근육, 내장, 동물의 폐사체 등을 갈아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뜻한다.
- OIE :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國際獸疫事務局, 국제수역사무국), 영어로는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라 부른다. 1924년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파리에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동시에 「위생식품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이 발효되면서, OIE는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되었다.
- Prion : 프리온.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바이러스 입자)의 합성어로 '광우병(狂牛病)을 유발하는 인자'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스탠리 프루시너(Stanley B. Prusiner)가 프리온이 광우병뿐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 공로로 199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 SRM : Specified Risk Material(特定危險物質, 특정위험물질), 소의 뇌, 내장, 척수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뜻한다.
- Traceability : 履歷追跡制(이력추적제), trace(추적)와 ability(능력)의 합성어로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로 추적(trace forward or tracking)과 소비단계에서 생산단계로 역추적(trace back or tracing)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TSE :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傳染性海綿狀腦症, 전염성해면양뇌증), 염소와 양의 '스크래피', 소의 '광우병', 사람에서는 '쿠루'와 '크로이츠펠트-야콥(CJD)병', 멧돼지의 '전염성 멧돼지 뇌병증(TME)', 엘크(사슴 종류)의 '만성적소모성질환(CWD)' 등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폰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신경질환을 일컫는다. 근육이나 뇌성분, 태반 등 특정위험물질을 먹거나 상처난 피부, 이 병에 걸린 사람의 각막이식, 수혈, 성장호르몬 투여, 수술과정에서의 의료기구 등을 통해 감염된다.

● Risk와 Hazard

무역에서 Risk(위험)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Uncertainty of occurrence economic loss), 또는 기본적인 확률과 실제결과 사이에 생기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Hazard(위해)란 손해발생 가능성(빈도, 크기에 관련된 가능성)의 조건을 만드는 구체적인 상태, 즉 Peril 발생의 요인(cause of peril)이 되어 손해를 일으키기도 하며, 또 그 손해를 더욱 가중하고 대형화하는 요인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식품에서 위험(risk)은 식품오염·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확률(probability)을 의미하고, 위해(hazard)는 그 부정적 효과의 심각성(severity)을 의미한다.

한편 식품안전성(food safety)은 식품위험(food risk)의 반의어로 사용된다.

● vCJD : new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일명 ‘인간광우병’

[참고자료 4] 사람과 동물의 프리온 질환

질병	숙주	발병기전
kuru	사람(Fore족)	종교적 식인관습에 의한 감염
iCJD	사람	프리온 환자의 성장호르몬, 뇌경막 등에 의한 감염
nvCJD	사람	BSE 프리온에 감염(가설)
fCJD	사람	PRNP 유전자의 생식세포 돌연변이
sCJD	사람	PrP ^C 에서 PrP ^{Sc} 로의 자발적 변화(?)
GSS	사람	PRNP 유전자의 생식세포 돌연변이
FFI	사람	PRNP 유전자의 생식세포 돌연변이
Scrapie(1732)	면양, 산양	유전적으로 감수성 있는 면양, 산양의 감염
BSE(1986)	소	프리온에 오염된 동물성 사료에 의한 감염
TME(1947)	밍크	면양이나 소 유래의 프리온 감염
CWD(1967)	엘크(사슴)	사슴의 만성소모성 질병, 프리온 감염으로 추정
FSE(1992)	고양이	프리온에 오염된 동물성 먹이에 의한 감염
EUE	kudu, nyala	프리온에 오염된 동물성 사료에 의한 감염

표 6 ▲ 사람과 동물의 프리온 질환

* I : iatrogenic(의원성), nw : new variant(새로운 변종), f: familial(가족성), s : sporadic(산발성), GSS : Gerstmann-Straussler-Scheinker disease, FFI : Fatal Familial Insomnia, TME : 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CWD : Chronic Wasting Disease, FSE : 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EUE : Exotic Ungulate Encephalopathy

[참고자료 5]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일지

2005.2~2005.4 한미 FTA 실무점검 회의

2005.2.28 제1차 한미 BSE 전문가회의 (농림부 가축방역과장, 질병관리본부 방역과장, 검역원 검역검사과장·해외전염병과장, 건국대 이중복 교수, 경북대 안수환 교수)

2005.4.19~4.21 제2차 한미 BSE 전문가회의 (농림부 축산국장·가축방역과장·통상협력과장, 질병관리본부 방역과장, 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서울대 이영순 교수, 건국대 이중복 교수, 경북대 안수환 교수, 한림대 김용선 교수 등 참석)

2005.6.5~6.12 제3차 한미 BSE 전문가회의 및 미국 현지조사 (가축방역과 김창섭 과장·장기윤, FTA과 이용직, 서울대 이영순 교수, 한림대 김용선 교수, 건국대 이중복 교수, 경북대 안수환 교수, 검역원 해외전염병과 조남인 과장, 검역검사과 허승무이재명, 외교통상부 북미통상과 배경택 외무관)

2005.6.20 제18차 한미재계회의

- * 로버트 포트먼 USTR 대표, “스크린 쿼터 폐지,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등 한미 FTA 협상을 위한 4개 선결 조건 제시

2005.11.29 제1차 가축방역협의회 (농림부 차관보,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서울대 최윤재 교수, 경북대 안수환 교수, 한림대 김용선 교수, 건국대 이중복 교수, 전남대 이민철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한국사료협회 김정호 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 유동준 회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 모임 강광파 이사,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배상호 전무이사)

- * 회의자료에 “미국 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이며, “BSE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소의 개체식별 시스템의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농림부 스스로 기록하고 있음.
- * 전문가 위원들은 미국 소의 BSE 위험도가 매우 낮으며, 3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주장
- * 미국과의 협상개시를 반대하는 위원들은 미국이 SRM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등 미국내 BSE 방역시스템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지적, 미국 농무부 FSIS의 도축장 점검결과 HACCP 미준수 및 기록미비 등 BSE 위반사례가 확인된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2005.12.14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 (농림부 차관보,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경북대 안수환

교수, 한림대 김용선 교수, 건국대 이중복 교수, 전남대 이민철 교수,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 한국사료협회 김정호 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 유동준 회장,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강광파 이사,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배상호 전무이사 등 총 19명)

- * 전문가들은 국제기준(OIE)을 존중한다는 의견 피력, 국제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
- * 생산자단체 위원들은 협상개시 선언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

2005.1.9~13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결정 (농림부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통상협력과장, 검역원 검역검사과장, 해외전염병과장, 조남인 서기관)

- * 미국의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 요구 중 하나로 쇠고기 수입재개 허용
- * 수입허용부위 :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살코기)
- * 도축 소의 월령 : 30개월 미만 (서류 또는 치아감별법 적용) →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A40등급(17개월령 이하)은 미국 내 쇠고기 생산량의 8% 이하에 불과함. 광우병 발생국인 일본이 20개월령 미만을 수입하기로 합의한 것보다 광우병 미발생국인 우리의 수입조건이 훨씬 불리. 일본은 30개월령 이하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예가 영국 17건, 일본 2건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20개월령 이하를 수입조건으로 관철시킴.
- *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당해 수출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만 수입 중단 (홍콩과 같은 조건) → 일본은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해당 작업장뿐만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시킬 수 있음.
- * 21조 단서조항 가-1)에 “사료규제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은 농림부가 자랑하는 성과가 아니라 사료규제조치가 법적으로 시행된 97년 8월보다 훨씬 후퇴한 조항에 불과. →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수입중단의 범위가 더 축소되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임.

2006.1.21 일본, 수입위생조건 위반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

- *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입을 전면 금지
- * 수출업체에는 미 농무부의 검사관이 상주하고 있으며, 수의사의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 있었음. → 한국 농림부는 미국의 전문가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홍콩의 SRM 제거 위반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업체에서 근무하는 미국의 전문가를 전혀 신뢰할 수 없음.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광우병 검역체계의 문제 지적

-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 *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짐(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 * 2004.6~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 했으며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 미국의 소비자 단체인 Food & Water Watch 등 Public Citizen의 정보공개 청구로 2005.8.15 미 농무부(USDA)가 공개한 자료에도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이었으며, 특히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나이 판정을 엉터리로 한 사례가 무려 86건이었음.
- *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에서도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과 기록관리 부적절을 지적함.(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두만 광우병 검사함)

2006.3.5 농림부, 미국 내 수출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상태 현지 점검 예정.

- * 미국 측이 한국의 '위생조건항목'에 불만을 표시하며 12일로 일방적으로 연기

2006.3.6 농림부 장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농림부고시 제2006-16호) 고시

- * 30개월 이하의 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방안 미비 (문서증명이 없을 때 치아조사로 나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안전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 * 2005.11.29 제1차 가축방역협의회 회의자료에 “미국 내 전체 사육두수 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이며, “BSE 발생시 신속하고 철저한 추적 및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국 소의 개체식별 시스템의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농림부 스스로 기록한 내용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굴욕적인 내용
- *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일본처럼 수입 전면 중단이 아니라 홍콩의 사례처럼 해당 작업장만 수입 중단 (홍콩에서만 벌써 3번째 SRM제거 위반 발생했음) → 미국이 수출용 작업장을 변경할 경우 실질적 수입 중단 효과는 거의 없음.
- * 일본의 경우 일본 전문가가 동행하여 불시에 미국 현지시설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나 한국의 경우 미국에 주기적 모니터링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
- * 미국의 현행 사료규제조치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영국에서 1988~90년에 시행하여 2만7천마리가 광우병 발생한 실패한 정책임. 뿐만 아니라 1997년 미국과 똑같은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했던 캐나다에서 이미 2건의 광우병 양성사례가 사료규제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행한 것이 확인됨.
- * 2004년 7월, 미국 식약청(FDA)은 돼지나 가금류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입법예고했으나 미국 축산기업의 반발로 시행 못함.
- * 2005년 10월, FDA는 SRM의 90%인 뇌와 척수만을 돼지나 가금류에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함.

2006.3.9 이길홍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과장 미국 내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방침 발표.

- * 미국 내 수출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이달 15~19일쯤 3개조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2주간 미국 동·중·서부로 나눠 파견할 예정이라고 발표.
- * 미국이 보내온 46개 수출작업장 명단이 12일쯤 다소 수정될 예정이지만, 시간이나 인력을 고려해 신청 작업장의 50% 정도만 현지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일정에 맞추느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위생점검을 '줄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 *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농림부가 줄속으로 진행하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일정에 제동이 걸림.

2006.3.13 미국 농무부 앨라배마 주에서 미국 내 3번째 광우병(BSE) 양성 확인 발표

- * 미 농무부는 역학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과학적·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해당 소가 10살 이상이라고 주장.
- * 또한 해당 소가 1997년 사료금지법 이전에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함 (광우병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4~5년. 실험적으로는 20개월령 이하의 어린 소도 감염 가능한 연구 결과가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20개월령 이상에서만 발병 기록 있음. 30개월령 이하의 어린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어 잠복기 상태인 경우 인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
- * 한편 미 농무부 수석수의사 John Clifford는 기자회견장에서 “성우(成牛)의 경우 치아조사만으로 나이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그것은 단지 추정치에 불과하며 우리는 정확한 나이를 결정할 수 없다”고 덧붙임.
- * 미 농무성(USDA)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의 Ron DeHaven 소장도 “연령 확인의 지표인 치아감별은 유용한 편이지만, 5년 생 이후 소들의 치아 형태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치아의 마모 정도에 의해 고연령우들의 연령을 추정할 수는 있다”고 말함.
- * 캐나다 정부의 문서 《National BSE Surveillance Programs》(2005.4.28)에 서에서는 “소의 나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품종등록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문서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치아 조사만으로 소의 나이를 30개월령 미만인지 그 이상인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명시.

2006.3.17 미국 측에서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 치아사진 1장을 한국 농림부로 보냄.

- * 미국은 이 사진 한 장만으로 광우병 감염 소가 10살 이상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함.
- *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MBC와 인터뷰에서 “덴티션(치아감별법) 갖고는 안 되죠. 덴티션은 30개월인지, 5살인지, 4살인지 다 똑같으니까, 이 한두 개는 빠졌겠죠.”라고 밝힘.
- * The USDA feels that documentation is the best way to determine the age of cattle because it provides the means to specifically age animals. Dentition can be used in the absence of documentation; **unfortunately, it only provides a general determination of age.**(Dee Griffin & David R. Smith, 《Understanding How USDA-FSIS Determines the Age of Cattle for Current BSE Regulations》)

2006.3.17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한국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수수팔떡,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한국생협연합회, 등 소비자환경단체)

2006.3.24 미국 정육회사 《크리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 농무부 상대 소송 제기

- * 자사가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자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저지당했다며 농무부를 상대로 워싱턴 지방에 소송 제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위해 일본처럼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미국 정육회사도 인정. 검사비용 두당 20\$)

2006.3.30 미국 측에서 팩스로 3가지 자료를 보냄

- * 팩스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서 4월 초에 현지조사팀을 보낼 것을 종용하면서 FTA 협정을 위한 협력적인 환경조성을 노골적으로 압박.
- 1) 해당 소를 안락사시킨 Darrel Gray의 소견서와 미 농무부 동식물검사소의 앨라배마 지역담당 수의사 Kenneth L. Angel의 소견서를 팩스로 한국에 보냄.(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설명 없이 자신의 경험에 의해 소의 치아를 볼 때 10살 이상임을 확신한다고 주장)
- 2) 2004년 8월판 《Procedure Manual for BSE Surveillance》부록으로 실린 "Uniform Aging for BSE Sampled Animals"와 "Sketches of Uniform Aging for BSE Sampled Animals"를 팩스로 보냄 (이때 보낸 사진과 그림은 4월 8일에 보내온 앨라배마 주의 건강한 11살 암소의 치아사진과 비교할 때 미국 측의 주장이 터무니 없고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치아조사의 비과학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3) 해당 소의 역학조사의 진행상황

2006.3월말 일본에서 프리온 전문 조사위원 50% 사임 파문

-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정부기구인 《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전문조사회》전문조사위원 12명 가운데 절반인 6명이 사임
- * 야마우치 카즈야(山内一也) 동경대학 명예교수와 카네코 키요시순(金子清俊) 동경의대 교수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평가에 대해서 최후까지 신중한 의견을 진술했으며, 동물위생연구소 프리온병연구센터의 시나가와 신이치((品川森一) 전(前)센터장은 “전두(全頭)검사 완화라는 결론을 내리려는 심의에 의문을 느낀다”며 회의에 계속 불참

2006.4.8 미국 측에서 2차로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의 치아사진을 보냄

- * 3월 17일 사진과 동일한 시점에 찍은 사진이 아니라 냉동보관하고 있던 두개골을 다시 꺼내서 찍은 사진

2006.4.11 미국 측에서 앨라배마 주에서 사육되고 있는 건강한 11세 암소의 치아 사진 3장 보냄

- *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의 치아가 11세 암소의 치아보다 더 마모되었기 때문

에 10살 이상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이 사진들을 보냈음.

- * 그러나 3월 30일에 보내온 사진과 그림들에서 8살 이상된 소의 치아와 비교해 볼 때 상호모순됨.(3월 30일의 사진과 그림에서는 8살 이상의 소의 치아는 절치사이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고, 치근도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4월 11일에 보내온 11세 암소의 치아사진의 경우 출생기록을 담은 문서가 없는 경우 결코 절대연령을 판별할 수 없다.
- * 농림부가 참고했다고 주장한 치아발달에 관한 논문 《절치(切齒)의 돌출, 발달과 마모(소위 '텍사스 아틀라스')》(Roy B. England)에도 11세의 치아는 “유용한 절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소는 풀을 먹기 위하여 잇몸판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 치아조사가 얼마나 비과학적인지는 미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농림부가 얼마나 엉터리로 광우병 소의 나이를 측정했는지 확인

2006.4.13 제주도 출장 (농림부 김창섭 과장, 건국대 장병준 학장, 종축개량협회 이종현·문효식 4명, 8~13세 샤로레, 앵거스 암수 7두의 치아 촬영)

- * 엘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와 품종, 사육환경, 질병상태, 사료, 유전적 특성이 다른 제주도 수입 소 7마리의 치아로 나이판정을 하겠다는 것은 통계학적 유의미성이 전혀 없는 넌센스에 불과하다. (현재 미국 내 9500만 마리 소 사육)

2006.4.17 미국 BSE 감염 소 치아관련 전문가 회의 (농림부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등 3명, 한우협회장·낙농육우협회장, 이영순장병준 교수, 검역원 검역검사과장·해외전염병과장, 종축개량협회 이종현 사무국장 등 총 11명)

- * 전문가들은 미국 측에서 제시한 사진과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미국 BSE 감염 소의 연령이 최소한 8세 이상인 것으로 판단.
- * 그러나 전문가회의 참석한 사람 중에서 소의 해부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 명도 없으며, 참석자들 중에서 치아감별에 의한 나이 판정 경험이나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람도 없음.
- * BSE 전문가 회의 참석자들은 치아사진만으로 절대연령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하라! 이 기술은 광우병 내성 소 개발 발표와 견줄 수 있는 우리나라 과학적 패거(?)임에 틀림없다.

2006.4.18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

-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한미FTA 농축수산물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 1) 미국 엘라배마 광우병 소의 나이확인도 물론 역학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재개를 졸속 처리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의 조치
- * 2) 한미 정부가 주장하는 “98년 4월”이 광우병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함
- * 3) 일본과 홍콩에서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수출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검역시스템은 한마디로 엉망
- * 4) 한국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결정의 근거는 비과학적이며 상호 모순

2006.4.19~23 미국 BSE 감염 소 나이 확인 출장 (건국대 장병준 학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종현 사무국장, 농림부 가축방역과 장기운 사무관)

- * 농림부는 “조사단은 소의 해부학을 전공한 교수와 현장에서 소의 나이를 수십년간 감별한 전문가, 그리고 광우병을 담당하는 정부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교수는 “소의 해부학”을 전공한 교수가 아니라 “쥐 간세포의 조직학적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조직학자”임. → 농림부는 수의학의 세부전공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거짓으로 우롱함.
- * 3월 30일 미국이 팩스를 통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내용대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출장에 불과함.
- * 앨라배마주 Auburn 대학의 Blackbelt 실험농장에서 모두 20두의 암소 치아를 조사. 5세 1두, 6세 2두, 7세 1두, 8세 2두, 10세 6두, 11세 4두, 12세 3두, 13세 1두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정부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10세와 11세의 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음.
- * 농림부 현지조사단은 미국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소는 9500만 마리인데 겨우 20마리를 보고 나이를 판정하는 첨단기술을 개발했단 말인가?
- * 가축매매시장에서 치아상태를 “SS(short and solid)”로 표시한 기록은 미국의 최종 역학조사 보고서에서도 언급하지 않을 정도로 개체를 인식할 수 없는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함.
- * 미국 가축매매 시장에서 번식능력(fertility)과 나이(age)를 결정하는 과정을 보면, 출생기록이나 개체별 인식장치 없이 치아조사만으로 암소의 나이는 오른쪽 어깨에 표시하고 임신상태는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는 19세기 말의 구닥다리 방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음. 주로 몸무게에 따라서 값을 매기며, 치아상태에 따라 SS=short and solid mouth, BM=broken mouth, SM=smooth mouth 등의 표기를 사용하나 이것이 절대연령을 표시하는 것은 결코 아님.

2006.4.25 미국 BSE 감염 소 나이관련 회의 (농림부 축산국장·가축방역과장 등 4명, 한우협회장, 낙농육우협회장, 장병준이중복 교수, 검역원 검역검사과장·해외전염병과장, 종축개량협회 이종현 사무국장, 한우시험장장 등 12명)

- * 미국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을 때 출장전 잠정적으로 내렸던 결과(8세 이상)를 번복할 어떤 증거도 관찰할 수 없었으며, 감염 소의 연령에 대한 미국측 설명을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
- * 3월 30일 미국에서 보내온 치아판별과 관련된 사진 및 그림과 4월 11일 미국에서 보내온 앨라배마의 건강한 11세 암소의 치아사진이 상호 모순된다는 반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번복할 증거는 우리 정부가 제시할 몫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밝혀내야 할 몫임에도 농림부는 미국 정부 대신에 눈물겨운 노력을 한 끝에 엉뚱한 결론에 도달함.

2006.4.26 농림부, 미국 BSE 감염 소 나이관련 현지조사결과 발표

- * 농림부, 광우병 감염소의 나이를 최소 8세 이상이라 최종 결론 내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절차 밟겠다고 발표

2006.4.28 국회 공청회,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이대로 좋은가?》

- *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축산단체관련협의회 주최
-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주제 발표 :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조치가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이고, ▲미국이 검역체계가 안전하지 못하며, ▲미국정부 스스로 미국정부의 검역과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보고서만 보아도 98년 4월은 안전성의 기준이 아니며, ▲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는 등 최근의 사태들은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함을 지적
- * 토론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주이석 해외전염병 과장, 전국한우협회 이근수 전북도지회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김용선 교수(가축방역협의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박상표 편집국장, 경북대학교 안수환 교수(가축방역협의회),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김희경 정책팀장, 환경운동연합 임지애 정책부장

2006.5.2 미 농무부(USDA) 동식물검사소(APHIS)에서 최종역학조사 결과 발표

- * 최종역학조사 결과 앨라배마 광우병 감염 소는 2004년 이전의 출생, 출산, 질병치료, 사육농장에 관한 기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함. 미국 정부는 해당 소를 사육했던 2곳의 농장과 해당 소를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35개의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추적에 실패.
- * 광우병 감염 소는 앨라배마의 한 농장에서 겨우 1년 남짓 살았을 뿐이며, 어디에서 태어나 어느 농장에서 자랐는지도 확인 불가.
- * 2005년 이전에 몇 번 출산을 했으며, 현재 새끼 송아지가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도 전혀 밝혀내지 못함.
- * 《캐나다안비즈니스(canadian business)》는 최종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당국은 광우병 감염 소의 나이를 확인시켜 줄 기록을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소의 치아검사를 통해 나이가 10살 또는 그 이상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치아검사는 소의 나이가 5살이나 6살이 넘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근사치에 불과하다”고 비판.
- * 최종역학조사 결과는 미국의 역학조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고 비과학적인지를 여실히 증명.(개체별 인식시스템이나 쇠고기 이력증명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음)

2006.5.6~5.21 미국 현지 시설 위생점검단을 파견

-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6-15호) 5항에 따라 요식행위로 파견.
- * 지난 3월 9일 이길홍 국립수의과학원 검사과장이 “3개조 7명으로 구성단 조사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시간이나 일정을 고려해 신청 작업장의 50%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모순되게 “4개조 8명의 조사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100% 방문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힘.
- * 현지조사 일정, 현지작업장 목록, 체크리스트, 해당작업장의 최근 2년간

SRM 제거 위반 여부,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해야

2006.5.16 신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수전 슈워브의 상원 인준청문회

- * 슈워브는 “무기고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무역개방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며, “한국에 대해선, 미국 광우병 발병 확인 전엔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체제 하의 권한들을 한국 쇠고기 시장을 여는 데 사용했다. 이것이 하나의 사례다”라고 밝힘.
- * 200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73차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BSE 관련 수입규정이 완화된 것.

2006.5.18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 * 광화문 미 대사관 앞 (오전 11시)
- * 식품위생 및 광우병안전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학교급식네트워크,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 * 거짓말을 근거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 * 1) 치아조사는 광우병 소 나이가 8살 이상이라고 입증하는 근거 못 된다.
- * 2) 미국 현지조사단 파견은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
- * 3)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30개월령 이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 4) 미 쇠고기 수입조건이 OIE 규정보다 강화된 조건이라는 해명은 거짓
- * 5) OIE 규정 자체가 비과학적이며 심각한 문제
- * 6) 미국가서 LA 갈비도 먹는데 쇠고기 수입 문제없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
- * 7) 정부는 국내유통단계의 안전망도 갖추지 않고 쇠고기 수입 재개

2006.6.5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FTA 1차 본 협상 개시

2006.6.6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 기자회견

- * “(미국의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위생 기준의 문제 등 본질적인 게 아닌 주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면서 “몇군데 설명을 받아야할 부분이 있고 해명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해명을 받는대로 다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힘
- * “문제가 되는 작업장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되도록 한꺼번에 (승인)하는 것이 낫다”고 덧붙임
- * 같은 날(6.6) 미국의 허술한 광우병 검역, 예방체계와 관련해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자료를 입수, 공개했던 미국 소비자연맹의 패티 로베라(Patty Lovera) 부국장이 CBS 라디오 <이슈와 사람>와 인터뷰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것에 비해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은 국민생명과 식품안전에 포기했다는 비판 제기

2006.6.7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미국의 수출용 쇠고기 작업장 승인 연기 발표

- * 일부 작업장에서 미국산과 타국산 쇠고기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축 처리
- * 30개월 이상과 이하의 소를 구분해 도축하고는 있지만 동일한 장비를 사용
- * 그러나 농림부의 50개 체크리스트와 미국의 쇠고기 작업장 37곳 중 몇 군데가 자격 미달인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의 공개를 미뤄 '은폐 의혹' 증폭

2006.6.8 박홍수 농림부 장관, 현지 점검 결과의 전면 공개 거부

- * KBS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 인터뷰 : "(현지 조사 내용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한다고 해서 (일반인에게) 크게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공개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양 측이 상의를 해야 한다"며 '조사 내용 공개 불가' 입장 밝힘
- *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비밀주의로 일관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생산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와 공개토론이나 공청회조차도 개최하지 않음.

2006.6.11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 * 오후 3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 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예교생활협동조합, 한국생협연합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

2006.6.12 타이슨푸드, 카길, 스위프트 등 미국 페이지 쇠고기 수출작업장 부적합 드러나

- * 6월 12일자 《축산신문》은 "37개 수출작업장중 7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문제의 7개 작업장 소유회사는 타이슨푸드(Est No. 9268외 2개), 카길(Est No. 86M외 1개), 스위프트(Est No. 969G 1개), 워싱턴비프(Est No. 235 1개) 등으로 모두 미산 쇠고기 금수조치 이전에도 한국으로 수출물량이 가장 많았던 굴지의 페이지급 펍커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 * 농림부의 '은폐 의혹' 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미국 거대축산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김현종 통상본부장,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 박홍수 농림부장관 등 노무현 정부의 고위관료들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

정리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http://www.vetnews.or.kr>)

TEL : 02-6267-7582 / 011-336-8560

한미FTA가 식품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leeeyj@greenkorea.org, 녹색연합 활동가)

한미FTA와 SPS

한미 FTA가 협상에서 미국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농업이다. USTR이 미 하원에 보낸 한미 FTA 협상개시 통보 서한을 보면 이번 FTA로 미국의 식품, 특히 축산제품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농업생산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11개월 간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의 여섯 번째 농업 및 축산업 상품시장이었습니 다. FTA 하에서 한국은 미국의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기타 농업영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이 주요시장에서 미국 농부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USTR 협상개시 통보서한 중-

통보서한을 보면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데 있어 ‘모든 관세를 없애겠다’는 것과 ‘농업영역에 대한 장벽을 낮추겠다’는 두 가지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단순히 미국과 농업의 호당 농경지 면적만 보더라도(미국 178헥터, 미국 1.5헥터) 농업부문에서 ‘관세’를 없앤다는 것의 충격이 어떨지는 상상이 간다. 한미 FTA에 있어서 ‘농업’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농민들의 반대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 분야의 몰락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이 이야기 하는 ‘기타 농업영역에 대한 장벽’에 해당하는 위생 및 검역조치(SPS)¹⁹⁾ 조항이 바로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미국은 ‘부당한 검역(SPS)’을 비롯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없애는 것을 이번 FTA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한미는 1차 협상에서 11개 분야에서 통합협정문²⁰⁾을 마련했는데,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농업과 SPS 분야에서 이견이 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것은 농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장차가 클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SPS 분야에서 1차 협상을 한 결과 한국측이 준비했던 것 이상으로 미국의 요구가 강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SPS에 관련한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USTR 협상개시 통보서한을 통해 미리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다.

19)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협정 : 식품및 동식물 검역규제 적용에 관한 협정으로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등 4개분야에 걸쳐 기준치와 규격을 국제적으로 정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1995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SPS협정에 따라 식품의 국제규격 기준이 각 국에 강제적용된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각국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 해야 한다. 국내 식품법규에 따라 수입식품을 규제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엔 SPS의 기준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이를 국내에선 적용하기 어렵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국내에 비해 오염물질의 허용치가 높거나 국내에서는 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외국산 식품들이 국제 규격임을 내세워 마구 들어올 경우 이를 저지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절실하다.

20) 통합협정문 마련에 합의한 분야는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분야이다.

위생검역 조치²¹⁾

- 한국으로 하여금 자국이 WTO에서 위생검역 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에 관해 약속한 바를 재확인하도록 하고 위생검역상 그 어떤 부당한 규제조치도 제거하도록 한다.
- 미국과 한국의 위생검역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
- WTO의 위생검역협정(SPS 협정)을 실천하는 데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위생검역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지침, 권고의 개발과 관련된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증진한다.

〈USTR 미국회 제출 협상 개시 통보 서한 중 위생검역 조치〉

USTR 미국 의회 제출 협상 개시 통보 서한은 미국의 축산물 수출업체들이 한국에서 부닥치고 있는 대표적인 장벽으로 '위생검역 조치'를 꼽아, 한국의 위생검역 관련 법률과 행정관행 등과 관련해 검역기준 및 검역행정의 대폭적인 간소화 및 완화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WTO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은 동식물에 대한 위생 및 검역조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게끔 한다는 것이다. WTO는 각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규제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에 관한 조치도 무역장벽으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보호보다 무역촉진을 우선하는 것이다.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2006년 3월 3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시 부시 대통령과 의회에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도 외교통상부가 1월 27일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두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본협상에서 어떤 사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지 예상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장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록한 이 보고서는 앞으로 협상에 있어 최대한 관련 조항을 없애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두 보고서 중에서 식품에 관련한 조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외교통상부 2005년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2006년 3월31일	2006년 1월 27일
(총 712쪽/한국 내용 25쪽)중 1-2, 비관세장벽	(총 1122쪽/미국 내용 34쪽)중 식품 관련
▲ 수입 통관 절차: 일반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통상 3~10일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한국이 승인하지 않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농산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6개월~1년이 걸린다.	▲ 수입규제: △수입금지=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중도덕을 위협하는 물품, 오염됐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된 물품, 가짜 상표를 붙인 물품, 동물의 질병이나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의

21) 상품무역 분야에서도 "적절한 미국 수입품 보호책을 개선하면서, 부패하기 쉽고 주기를 타는 미국산 수출품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관행을 제거한다"라는 부분과 관세 문제, 원산지 규정, 집행 협력 분야에서도 "원산지 규정, 이들 규정의 적용 절차, 우회 문제를 제기할 조항 등은, 한국과의 FTA 하에서 특혜관세율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선에서, 오직 그러한 처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부분이 넓게 보면 SPS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전 수입 승인** 한국 수입업자는 의약품, 의료장비, 화학제품, 컴퓨터, 전기통신 장비, 식품 첨가물 등을 수입하고자 할 때 한국 정부 당국에 사전에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들도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수입품목이 너무 많다.

▲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 2004년 한국 식약청은 국내 수입업자가 농산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연간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테스트'의 검사 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췄다. 검사 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한국은 건본 수출, 검사, 테스트, 인증 등을 하는 데 있어 미국식 "GRAS"(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표준을 채택하지 않고 한국 특유의 까다로운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GRAS 식품에 대한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라벨링 요건**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최근 미국산 생감자에 대한 라벨링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 **유전자조작 식품 규제** 한국은 2004년 유전자조작 콩, 옥수수, 감자 등에 대한 '자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를 수입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은 2006년 모든 유전자조작 작물에 대한 '환경 위험 평가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비준했다.

▲ **유기농 식품 인증** 한국 식약청은 2004년 수입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국의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인증을 부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인증을 생산자,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에 게만 발급할 뿐 중간상인이나 기타 상인들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하지만 식약청

동식물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제품 등의 수입이 금지돼 있다. △수량제한=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이나 쿼터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수입허가 및 기타 규제=대부분의 농축산물 수입은 사전에 미국 농무부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수출이 승인된 국가와 제조회사로부터의 수입만 허용되고, 수입 축산물은 세관에서 농부부 식품안전검사국의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장비 등도 식품의약국이 규정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농축수산품의 수입통관규제** △세관 및 국경보호국=세관은 테러용 무기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상적인 통관절차 외에도 수입 신고 전 X-레이 검사, 수입 신고 후 수입검사 등을 빈번히 실시한다. △농무부 산하 식물 검역소=국가별 병충해 관련 통계를 근거로 국가별로 수입 가능한 농산품을 지정하고, 식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이 수입검사에서 한국 찻잎과 팽이버섯에서 병충해가 검출해 이 제품들이 전량 폐기 처분된 바 있다. △농무부 산하 동물검역소=동물 질병이 발생하는 국가를 지정하고, 이 국가로부터의 축산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축산품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소에서 수입허가와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한국 축산품은 카레에 포함된 소량의 쇠고기 등 몇 가지 예외를 빼고 모두 금수 조치돼 있다.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소=쇠고기, 닭고기 등 축산품에 대해서는 제조, 수입, 판매,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식품안전 위해의 분석, 평가 및 중점관리(HACCP)'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청(FDA)=식품의 물질적 오염, 화학적 오염, 생물학적 오염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이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최근에 한국의 신고배가 농약 잔류 허용치를 초과해 압류 조치를 받은 바 있고, 한국의 찻잎 통조림, 두유, 식혜 등 열처리가 됐거나 진공 포장된 식품이 사전에 FDA에

은 2005년 3월 유전자조작 등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농 라벨을 달아주는 기존의 라벨링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 건강보조식품 규제: 한국 식약청은 비타민, 미네랄 등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운동보조식품이나 허브 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된 적도 있다. ▲ 바이오테러 대응 법률: 2003년 12월부터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사람·동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시설의 소유자·운영자대리인은 해당 시설을 미리 식품의약품청(FDA)에 등록해야 한다. 또 각 수송 경로에 따라 사람·동물용 식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5일 2시간 내지 5일 8시간 이내에 관련 정보를 FDA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식품의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다.
--	--

이 보고서만 보더라도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식품검역 기준을 낮추는 요구를 해왔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면,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MRL)' 기준치가 적용되는 수입 농산품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조류독감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은 주에서 생산된 미국산 닭고기 등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했다. 특히 "한국은 유전자조작과 같은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사용된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달도록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 한국 시민사회가 오랜 운동을 통해 제도화한 유전자조작 표시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유전자 조작식품)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GMO 재배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콩의 35%, 옥수수의 25%가 GMO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WTO 협상에서 GMO 작물에 대한 차별적 무역조치의 철폐를 주장하는 마이에미 그룹(미국,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의 대표주자이다.

WTO SPS 조항의 문제점

WTO SPS에서는 국제기준과의 조화, 동등성원칙 인정, 위험평가제도의 도입, 명료성확보 등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검역조치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기준(예, CODEX)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기준, 지침, 권고를 각국이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제9조), 국내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보호수준으로 설정하려면 그것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등성의 원칙(동등성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에 따라 수출국이 자신들의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의 SPS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의 해당 위생 및 검역 규제조치를 수입국의 규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한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무역제한조치로 위생 및 검역규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SPS로 했을 때 치명적인 것이 위생 및 검역관련 기술, 인력, 시설, 체계가 모두 열악하다. 검역체계에도 문제가 있는데, 동물검역소에서 실시하는 육류 위생검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고, 수입수산물의 위생기준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관할이다. 농수산물물은 농림부 관

할로 농협협정으로 볼 수 있는데, 현 행정체계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있다.

SPS를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는 각 나라별 고유성을 해치고, 실제 과학적 근거주의에 입각함으로써 과학적 근거를 댈 수 없는 나라들은 사실상 식품안전 분야에서 무장해제 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과학기술이 뒤진 국가 또는 후진국은 선진국의 무역촉진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과피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수확 후 저장 목적으로 살균, 살충 등의 일반 농약의 사용(소위 Post-Harvest)을 인정하고 있으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에 성장촉진 및 질병예방, 치료용의 광범위한 항생물질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국민 건강 차원에서는 검역이 오히려 중요하고 한층 강화되어야 함²²⁾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 FTA가 요구하는 내용은 검역의 '약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식품이 몰려올 것인가

포트만의 협상개시 선언이후 미 제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²³⁾ 그 중에서도 식품업계의 반응은 유난했다. 켈 달리, 식품협회회장(Food Products Association)은 “식품협회는 식품과 농산품의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강하게 지지한다”며, “25억 달러(\$2.5 billion)에 달하는 미국 농산품 수출액이 말해주듯이 한국은 농업분야에서 미국에게 여섯 번째로 큰 무역당사국이다. 미국 식품 회사는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가공된 식품과 음료를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²⁴⁾ 제롬 코작, 전국우유제조연합회장(National Milk Producers Federation)은 “한국은 미국 낙농산업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다. 2004년 대한(對韓) 낙농업 수출액은 4천 6백만 달러(\$46 million)였다. 지난 해 한국에 대한 낙농업 수출액은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2005년 총 수출액은 약 5천 8백만 달러(\$58 million)에 이를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의 낙농업 수출에 매우 큰 잠재적 시장이다”라고 발표했다. 돈 볼, 전국돈육생산자위원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도 하루 육류단백질 섭취량의 44%를 돼지고기에 의존하는 한국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과연 어떤 식품과 축산품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인가?

미국의 거의 모든 축산업은 공장식 대량 생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²⁵⁾ 미국의 축산물과 축산관련 식품의 문제는 안전하지 않은 사료와 각종 성장촉진 호르몬이다. 동물을 공산품으로 취급한 공장식 대규모 축산업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광우병이며, 광우병은 소에게 육식사료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되새김동물이외

22) 홍형선, UR/SPS(위생 및 식물위생)협정하의 현행검역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법제현안 제 95-16호(통권제16호)

23) 산업, 농업,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75개 이상의 기업과 협회들로 구성된 한미 FTA 지지동맹 (U.S-Korea FTA Business coalition, a coalition of over 75 companies and associations representing industry, agriculture, and services sectors) 성명서

24)

25) 미국인들의 건강상태?

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소가 워싱턴, 텍사스 그리고 최근 앨라배마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이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협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한국정부는 한미FTA 개시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요구한 4대 조건중의 하나로 광우병 때문에 금지했던 쇠고기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생후 30개월 미만인 쇠고기 중 뼈를 제외한 부분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다. 협의가 마무리되고, 미 통상무역부의 포트만은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 제품에 대해서 완전한 개방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더해 2006년3월31일,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미국은 기존에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 전 제품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뼈있는 쇠고기, 살코기 외의 잡고기, 찌꺼기 고기 등에 대해서도 즉각 수입을 재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상황들을 살펴보면 한국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의 건강에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다.

- 2003년 12월 :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당시 한국은 이전까지 미국 쇠고기 수입 국가 중 3위)
- 2005년 12월 : 일본 제한적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
- 2006년 1월 13일 : 한국 광우병 파동으로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발표
- 2006년 1월 : 일본 다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짐)
- 2006년 3월 6일 : 한국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을 발표하면서 "도축 소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 감별법에 의해 30개월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고시
- 2006년 3월 13일 :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 소 발견

광우병 쇠고기 수입 일시

지난 3월 6일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위생 조건'을 발표하면서 "도축 소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치아 감별법에 의해 30개월 미만으로 판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고시했다. 30개월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안전하다고 규정하는 소이다. OIE 규정은 30개월 미만의 소는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국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소가 확인되었다. 농림부의 발표가 있는 지 7일후, 3월 13일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다. 그러나 2005년 12월 농림부는 이미 미국과 '1998년 4월 이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는 쇠고기 수입 재개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협의를 한 상태이다.²⁶⁾ 따라서 광우병으로 죽은 소의 나이가

26) 강양구, "광우병 쇠고기 먹는다고 다 광우병 걸리지 않는다"? 기자의눈] 영국인은 누구나 존 검머 장관을 기억한다 2006-05-04 프레시안

쟁점으로 떠오른다. 문제는 미국 소의 80%가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데, 농림부는 현지에서 전문가를 보내 죽은 소의 머리를 파내 치열을 확인하고 “1998년 4월”이전에 태어난 소라고 직접 확인을 한다. 이제 논란은 치열 확인을 통해 소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가와 “1998년 4월”이 안전하다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가이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치열을 통해 확인하기는 힘들고 주장하고 있고, “98년 4월”이 광우병 안전에 대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²⁷⁾

광우병소에 대해 나이 확인은 물론 역학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소 수입재개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의 조치다. 일본은 수입을 재개 이후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바로 수입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광우병 소의 샘플 검사는 전체 도축소의 1%에서만 이루어진다. 일본의 경우 도축소 전체, 영국의 경우 30개월 이상의 소 전체에 대해 광우병 검사가 시행되는 것에 비해 미국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보이는 소만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미국에 얼마나 많은 광우병 소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인지도가 있는 광우병소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이라면 한미 FTA이후 수많은 위험 식품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SPS 기준 완화가 미칠 영향

① 위협받는 밥상

한미 양국의 FTA 협상은 무역거래 활성화라는 목적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당연히 지켜야 할 안전한 식품에의 접근권 까지 해체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식품안전성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한미 FTA를 통해 서로의 식품안전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바닥으로의 경쟁”을 시작할 것이고, 문제는 전문인력, 기술, 장비, 정보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는 한국이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검역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 따라서 중국산 낱 꽃게 파동, 김치 낱 검출, 장어 말라카이트그린 발암물질 검출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수입 검역 시스템을 재 정비하고, 우리 식탁에서 중요한 식품 순서로 위생 검사 항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준을 더 낮추게 될 판이다. 한국이 유전자조작 식품, 유기농 식품 등에 대해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나 광우병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쇠고기 부위나 조류독감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가금류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27) 미국 정부가 광우병 예방을 위해 98년 4월 이후 도입한, “되새김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원칙(The FDA ban on the feeding of ruminant-derived protein to ruminants)규정은 국제 기준에 턱없이 미달하는 조치이다. 미국에서 채택한 위 규정은 쉽게 설명하면 소에게는 소를 안 먹여도 돼지나 닭에게는 소등의 육골분을 먹이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규정만으로는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료가 섞여 소가 육골분을 먹게 되는 상황(즉 소를 채식동물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영국에서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제한적 동물사료 금지 정책을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그 기간 동안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하여 이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도 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돼지나 닭에게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사료만을 허용하는, 보다 엄격한 사료금지 정책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즉 98년 4월이 광우병 소의 안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광우병 비상이 걸린 일본에서 모든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것도 치열 감별만으로 나이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다. '바닥으로의 경쟁'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이 밀리는 우리나라는 '밥상위의 최소한의 안전권'까지 위협당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활발한 식품거래로 인해 이득을 보는 '거대 식품자본'은 웃을 것이고, 소비자로서의 양국 국민들은 희생자가 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로서 각 국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② 생태계의 영향

SPS 기준완화는 국내 동식물보호와 국토보전(환경/생태계 보존)차원에서 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 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일단 국내에 유입되면 완전히 박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비용 또한 증가할 것이다.

③ 농업의 붕괴

한미 FTA로 무엇보다 농업이 무너진다. 환경단체는 제철, 지역생산 유기농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그것은 단지 몸에 좋은 한국산 유기농산물을 먹는다는 것만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미 FTA는 그런 공동체를 철저히 무너뜨린다. 농업이 농약의 과대 사용 등으로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킨 점도 있지만, 논을 비롯 농업 자체가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식량안보, 물 저장, 홍수방지, 생태계 서식지, 기온 저감 등)기능이 있다. 따라서 농업의 붕괴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④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 물거품

한국사회에서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환경단체의 주요화두 중에 하나이다. 환경운동연합 벌레먹은 사과팀의 지속적인 식품 첨가물과 각종 유해 식품물질에 대한 문제제기, 환경정의의 한국판 '슈퍼사이즈 미', 녹색연합의 '자연을 담은 소박한 밥상', 그리고 한살림과 각종 먹거리 운동, 생협운동,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과 유기농 식품을 공급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한미FTA로 인해 기반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글의 마치며

1차 협상에서 위생검역(SPS)관련해서 한국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간 협의를 강조했고, 미국은 분쟁절차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미국이 농산물 뿐만 아니라 축산물과 식품 관련한 전반적인 분야의 수출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과학적인 검역 방법과 기준을 명분으로 한국시장에 진출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한국정부가 지난 5월 12일 국회에 '대외 비공개' 표시를 달아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목표 및 우리측 협정문 초안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위생 및 식물검역 조치 적용에 대하여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미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현재 정부가 한미 FTA체결이 국민들에 생활과 건강에 미칠 세부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내용을 토대로 협상의 원칙과 대안을 마련하는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3년 가공식품 전체 수입량의 44%를 미국에서 수입할 정도로 한국의 식품에 대한 미국 의존도는 높다. 사실 미국의 식품산업은 거대 농식품복합체가 지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병선(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길과 콘티넨탈이 미국의 곡물수출의 거의 5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초국적 농식품복합체는 곡물의 가공, 동물사료, 가금류, 낙농제품, 과일주스, 씨리얼, 음료농축액 등 음식료부분의 거의 전 부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자 및 비료,

농약과 같은 농업생산자재산업에도 진출하여 농업생산과 관련된 사업전반에 걸쳐 진출해 있다.”며 지적한다. 결국 한미FTA체결은 한국의 식량수급을 소수의 초국적농식품복합체에 더욱 의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타격을 입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에 대한 선택권도 위협에 빠진다. 미국정부는 철저히 미국 농식품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소비자들이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비자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FTA가 산업에 미칠 수많은 영향들 중에서 기본적인 국민의 안전한 식품에 대한 접근권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 WTO 위반?

2005년 9월 9일, 대법원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학교급식조례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내렸다. 이 판결은 아이들의 급식에까지 WTO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WTO 협정보다 더한 것이 ‘자유무역’ 활성화를 위해 아이들의 건강을 미래까지도 팔아먹는 정부의 태도였다.

학교급식네트워크는 주민발의로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명시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해 왔다. 전북도의회는 2003년 10월 전북도내 학교 급식 때 전북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전북산 제품을 쓰는 학교에 식품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정부는 전북조례가 WTO협정 위배라며 전북도교육청을 움직여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WTO 협정은 수입물품이 국내의 동종물품과 경쟁할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산을 우대하는 전북도의 조례는 WTO 협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조례가 WTO의 분쟁해결협의절차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미국, EU, 일본 등 21개국이 모두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 사용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해 제소의 가능성이 낮다. 결국 우리정부가 알아서 국내법보다 WTO를 더 배려한 것이다. 설사 나중에 제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가 지켜야 할 부분을 알아서 포기한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결국 한미 FTA협상에 있어서 미국산 식품의 대대적인 수출 공세를 펴는 미국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 된다. 축구로 치면 자살골이다. 지난 4월27일,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학교급식조례제정 움직임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EU처럼 호르몬 쇠고기나 GMO분쟁에 있어 미국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한국정부에 기대도 못한다. 제발 상식의 수준에서 풀뿌리 운동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T. 02-747-8500 / 016-623-4907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2005년 12월 12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20일 영성한 미국의 광우병 대책때문에 광우병 특정 위험 부위가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어 또 다시 수입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후의 일·미 정부 협의에서도 미국측은 일본에 대한 수출 프로그램을 준수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을 뿐이며, 일본 정부는 미국의 광우병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05년 12월 미국 사찰 보고서에서도 미국 정부나 업계의 주장에 대해 양보하면서 많은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각지에서 소비자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만, 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미국 정부의 요구대로 수입 재개를 실시할 우려가 있다. 이 문제는 한국에 있어도 같은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6월 7일에 예정하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결정을 연기했다. 일본 정부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 일본 소비자는 미국의 광우병 대책이, 전체 검사, 모든 광우병 특정위험부위의 제거, 육골분 사료의 제조·이용 금지 등의 사료금지조치, 이력추적제도 확립이 없는 영성한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세계 각국의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연대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6월 11일

NPO 법인·일본소비자연맹 제33회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한국 결의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한국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하는 사태를 앞에 두고 비통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정부에 반복해 질문해 왔다.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답변도 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은 안전한가? 미국정부 스스로도 새로운 대체입법을 내놓고 있을 만큼 안전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검역시스템은 그러면 안전한가? 미국은 전체 도축소의 1%만 검사를 할 뿐 광우병 발생국가 중 최악의 검역시스템을 가진 나라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도축장은 안전한가? 미국의 도축장들은 불합리한 수입조건조차 지키지 못해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 금지된 물질이 발견되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하여 먹지 않을 수 있는가? 국내의 쇠고기 유통망은 전혀 정비되어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다른 쇠고기들과 미국산 쇠고기를 구분할 수 없다.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한미 FTA 본협상 이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고, 국민건강을 도외시킨 채 미국의 축산기업들의 압력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일정을 졸속적으로 결정하려 근거없는 강변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마지막으로 묻는다. 과연 한국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인가 아니면 미국의 축산기업과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유통업체와 일부 대형외식업체 체인들의 이익이 우선인가? 우리는 다시 묻는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인가? 아니면 국민의 참여와 이익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진행되는 한미 FTA의 체결이 우선인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면서 체결해야 할 그 어떠한 협정도 있을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국익도 없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미국정부는 광우병 예방정책을 개혁하고 타국정부들에 대한 쇠고기 수입압력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하는 한국정부와 외교통상부, 농림부는 각성하라

하나, 이윤보다 생명이다.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하라.

2006년 6월 11일

식품 위생 및 광우병 안전 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한우협회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미FTA저지농축산대책위